

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“관세 분야 개정사항 안내”

정부는 2023년 7월 2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「2023년 세법개정안」을 발표하였습니다. 해당 세법 개정내용은 경제 활력 제고, 민생경제 회복, 미래 대비 및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를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, 2023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관세법 시행령 등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I. 2023년 세법 개정 기본방향

1.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**수출·투자·고용 지원**
2.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서민·중산층 **세부담 경감, 소상공인·중소기업 지원**
3. 인구·지역 등 구조적 위기극복 위한 **출산·양육, 지역균형발전** 지원
4. **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세입기반 확충** 등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

II. 주요 개정내용

1.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 및 보상금액 설정

- (1) 개정이유 : 납세자 권리 보호
- (2) 적용시기 : 2024년 3월 1일 이후 검사하는 물품부터 적용
- (3) 시행령 개정내용(시행령 251의2)

현행	개정안
<input type="checkbox"/> 세관의 물품검사로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 <input type="checkbox"/> 손실보상 금액 - 수리할 수 없는 경우: 물품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- 수리할 수 있는 경우: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	<input type="checkbox"/> 손실보상 대상 및 금액 확대 <input type="checkbox"/> 손실보상 금액 - 검사대상 물품 : 물품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- 포장용기, 운송·운반수단 :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한 금액(구매가격 한도 내)

2. 장부 및 증거서류의 작성·보관 방법 구체화

- (1) 개정이유 : 과세행정 합리화 및 과세형평성 제고
- (2) 적용시기 :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고 또는 제출 분부터 적용
- (3) 법 개정내용(관세법 12)

- 신고·제출한 자료가 아닌 장부 및 증거서류를 5년 이내 범위에서 보관하도록 규정
- 장부 및 증거서류의 종류·보관기간 등을 시행령으로 위임

(4) 시행령 개정내용(시행령 3)

현행	개정안
<input type="checkbox"/> 신고·제출한 자료가 한해 5년 이내 범위에서 보관 <input type="checkbox"/> 수입·수출·반송신고필증: 신고·제출 → 보관 <input type="checkbox"/> 신고필증 외 관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 등 관련 자료: 신고·제출 생략 → 미보관 (신설)	<input type="checkbox"/> 신고·제출하지 않은 장부 및 증거서류도 5년 이내 범위에서 보관 <input type="checkbox"/> (좌 동) <input type="checkbox"/> 신고·제출을 생략한 자료도 보관하도록 변경 <input type="checkbox"/> 장부 및 증거서류를 정보보존 장치에 작성·보관하는 기준 ① 전자계산조직의 개발·운영 관련 기록을 보관 ②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·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 및 절차를 마련 ③ 거래내용 등의 검색·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관 <input type="checkbox"/>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작성·보관할 수 없는 장부 및 증거서류의 구체적 유형 ①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해야 하는 문서 ② 자산 취득·양도로 기명날인·서명한 계약서 ③ 소송 관련 제출·접수한 서류·판결문 사본 ④ 인가·허가 관련 제출·접수한 서류·인·허가증
(신설)	<input type="checkbox"/>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작성·보관할 수 없는 장부 및 증거서류의 구체적 유형 ①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해야 하는 문서 ② 자산 취득·양도로 기명날인·서명한 계약서 ③ 소송 관련 제출·접수한 서류·판결문 사본 ④ 인가·허가 관련 제출·접수한 서류·인·허가증

3. 관세평가 제1방법 적용대상 수출판매물품 정의

- (1) 개정이유 : 도착기준으로 수출판매물품 정의 명확화
- (2) 시행령 개정내용(시행령 17)

현행	개정안
<input type="checkbox"/> 관세평가 제1방법의 적용대상 <input type="checkbox"/> 적용물품 -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 <input type="checkbox"/> 적용제외 -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- 수입 후 경매 등으로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 수입물품 등	<input type="checkbox"/> 적용대상 명확화 <input type="checkbox"/> 수출판매물품 정의 보완 -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으로서,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한 원인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물품 <input type="checkbox"/> 정의 보완에 따른 용어 정비 - 무상으로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- 국내에 도착 후 경매 등으로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물품 등

4. 부과대상별 덤핑방지관세율 규정 명확화

(1) 개정이유 : 덤핑방지관세 적용세율 규정 명확화

(2) 시행령 개정내용(시행령 65)

현행	개정안
<input type="checkbox"/>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조사기간 공급한 자 중 조사대상 선정 공급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료제출자: 개별덤핑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조사에 따른 개별공급자별 덤핑율 - 제출거부자: 단일덤핑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조사없이 이용가능정보로 산출 ○ 조사기간 공급한 자 중 조사대상 미선정 공급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↳ 특수관계자 규정은 없으나, 부과규칙으로 운용 중 - 임의자료제출자: 개별덤핑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조사에 따른 개별공급자별 덤핑율 - 자료미제출자: 평균덤핑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개별덤핑율을 가중 평균 ○ 조사기간 이후 신규공급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존 대상자와 특수관계: 특수관계자의 덤핑율 적용 - 특수관계 없음: 개별덤핑율 	<input type="checkbox"/>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별 적용세율 명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조사대상 선정 공급자 (미선정 공급자 중 특수관계자 포함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좌 등) - (좌 등) ○ 조사대상 미선정 공급자 및 신규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 명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특수관계 없음: 평균덤핑율 - 특수관계 없는 공급자 중 자료제출자: 개별덤핑율. 다만, 신규공급자의 경우 간소화된 절차를 통하여 개별덤핑율 산정 가능 - 신규공급자 중 기존 대상자와 특수관계: 특수관계자의 덤핑율 적용. 다만, 특수관계 관련 자료 제출 거부 등 검증 곤란한 경우 단일 덤핑율 * 덤핑방지관세 부과 규칙(별도 부령)에서 운용 중인 사항 명확화

5. 우회덤핑 조사 및 부과 절차 등 마련

(1) 개정이유 : 우회덤핑 제도 도입에 따른 후속 절차 규정 마련

(2) 적용시기 : 2025년 1월 1일 이후 우회덤핑 조사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

(3) 관세법 개정내용(관세법 56의2 신설)

<input type="checkbox"/>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우회덤핑 물품에 우회대상 물품과 동일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○ 우회덤핑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등 우회덤핑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규정

(4) 시행령 개정내용(시행령 71의2 신설)

현행	개정안
<input type="checkbox"/> (신설)	<input type="checkbox"/> 우회덤핑 제도 도입에 따른 후속 절차 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우회덤핑 정의: '사소한 변경'을 통한 관세부과 회피 행위(구체적인 판별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위임) ○ 우회덤핑 조사 절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무역위원회 조사개시: 부과청인 신청 또는 직권 - 조사 기간: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(1개월 연장 가능) - 관세청장은 조사개시 전 사전검토 가능 ○ 우회덤핑 방지관세 부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재부장관은 우회덤핑 물품에 우회 대상인 기존 물품에 부과 중인 덤핑방지관세율을 동일하게 적용 - 결정 기한: 조사개시일로부터 8개월(1개월 연장 가능) - 우회덤핑 조사개시 이후 수입분부터 소급부과 ○ 기타절차: 제도 운영을 위한 기타 절차 규정은 원심 조사 관련 조항 등을 준용 - 관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절차 이외 필요한 사항은 무역위와 기재부장관과 협의 후 고시

6. 용도세율 전용물품 신청방법

(1) 개정이유 : 용도세율 전용물품 신청절차 구체화

(2) 관세법 개정내용(관세법 83)

<input type="checkbox"/> 용도세율 전용물품은 용도세율 적용 신청 생략 가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승인받은 경우('용도세율 전용물품')에는 용도세율 적용신청 생략 가능

(3) 시행령 개정내용(시행령 97)

현행	개정안
<input type="checkbox"/> (신설)	<input type="checkbox"/> 용도세율 전용물품 신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입물품의 품명, 규격, 용도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청 ○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에게 위임

7. 관세포탈법 명단공개 세부기준 규정

- (1) 개정이유 : 명단공개 기준 구체화
- (2) 적용시기 : 시행령 시행일 이후 공개하는 분부터 적용
- (3) 관세법 개정내용(관세법 116의2)

- 포탈관세액이 2억원 이상인 관세포탈법을 명단공개 대상에 추가
 - * (현행) 체납일로부터 1년 경과 관세 및 내국세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만 공개
- 명단공개 제외사유, 공개내용·기간, 공개기간 만료 후 계속 공개사유 등을 시행령으로 위임

- (4) 시행령 개정내용(시행령 141의5)

현행	개정안
<p><신설>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명단공개 제외사유 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공개내용·기간, 계속 공개사유 등을 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공개내용) 관세포탈법의 성명, 나이, 직업 등 ○ (공개기간) 5년(상습범인 경우 10년) ○ (공개기간 만료 후 계속 공개사유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납부의무 세액·과태료·벌금을 미납한 경우) 그 세액 등을 완납하는 날까지 - (형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) 그 형 집행이 완료되는 날까지

8. 출국금지 등 요청대상 추가

- (1) 개정이유 : 조세회피 방지
- (2) 적용시기 : 영 시행일 이후 공개하는 분부터 적용
- (3) 시행령 개정내용(시행령 141의11①)

현행	개정안
<p><input type="checkbox"/> 관세청장이 출국금지·정지 등을 요청해야 하는 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5천만원 이상 관세체납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한 자 -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- 명단이 공개된 고액·상습체납자 등 <p><추가>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출국금지 등 요청대상 추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좌 동) <p>- 명단이 공개된 고액 관세포탈법</p>

9. 과세정보 전송요구권 대상 정보 등 세부내용 규정

- (1) 과세정보 제공 가능 대상기관 구체화
- 개정이유 : 무역 관련 서비스업 활성화
- 관세법 개정내용(관세법 116의6①)

- 납세자가 관세청에 본인 및 제3자에게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전송해줄 것을 요청 가능
 - 과세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자로서 제3자 중 전기통신사업자의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

- 시행령 개정내용(시행령 141의13①)

현행	개정안
<p><신설>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과세정보를 받을 수 있는 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신용정보법」 제33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, 은행,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○ 그 밖에 본인정보의 활용 수요, 본인정보를 전송·수신하는 정보시스템의 안전성·신뢰성, 개인정보 보호 수준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관세청 고시에서 정하는 자

- (2) 제공 가능 과세정보의 범위 규정

- 개정이유 : 납세자 편의 제고 및 무역 관련 서비스업 활성화
- 적용시기 : 2024년 7월 1일 이후 전송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
- 관세법 개정내용(관세법 116의6②)

- 납세자가 관세청에 본인 및 제3자에게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전송해줄 것을 요청 가능
 - 관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

- 시행령 개정내용(시행령 141의13②, 별표2의2)

현행	개정안
<p><신설>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제공가능 정보의 범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관세법」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등에 따른 과세정보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「관세법 시행령」 별표 2의2에서 열거 중

10. 기타 개정사항

- (1) 관세법 해석 질의회신 절차 보완(시행령 1의3⑤)

- 개정이유 : 납세자 권리 보호
- 적용시기 : 관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 질의하는 분부터 적용

- 개정내용 : 질회신 절차 예외 추가
(그 밖에 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로서,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기획재정 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)

(2) 일시적 수출입 제한금지 관련 통관보류 근거 마련(시행령 244)

- 개정이유 : 수출입 제한금지시 통관보류 근거 마련
- 적용시기 : 영 시행일 이후 수출입하는 분부터 적용
- 개정내용 : 통관보류 사유 추가
(관계 법령에 따라 수출입의 일시적 제한금지 여부 등을 세관장이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)

(3) 마약밀수 고위험자 정보범위 구체화(시행령 263의3)

- 개정이유 : 마약밀수 차단 강화
- 적용시기 : 영 시행일 이후 정보제출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
- 개정내용 : 관세청이 정보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정보의 범위 구체화

(4) 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(시행령 263의2 별표3)

- 개정이유 : 과세형평성 제고
- 적용시기 : 영 시행일 이후 과세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
- 개정내용 : 공공기관 등 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

(5) 신고내용과 다른 보세운송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(시행령 265의2 별표5)

- 개정이유 : 과세형평성 제고
- 적용시기 : 영 시행일 이후 의무를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
- 개정내용 : 보세운송 수단 준수 위반 등 과태료 부과 대상 추가

(6) 관세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규정 정비(시행령 285의2, 285의3 등)

- 개정이유 : 조문 정비 및 유사 명칭 사용 제재
- 적용시기 : 2024년 7월 1일 이후 위법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
- 개정내용 :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명칭을 관세정보시스템으로 변경 등

III. 세법 개정 추진 일정

1. 개정대상 법률 : 총 21개

(1) 내국세(17개)

- 국세기본법·국세징수법·소득세법·법인세법·조세특례제한법·상속세 및 증여세법·종합부동산세법·부가가치세법·개발특별세법·주세법·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·교육세법·인지세법·농어촌특별세법·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·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·시행령·농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

(2) 관세(4개)

- 관세법·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,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 관세 규정,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

2. 추진 일정

- 2024.01.23.(화) : 시행령 개정안 발표
- 2024.01.25.(목)~2024.02.14.(수) : 입법예고
- 2024.02.27.(화) : 국무회의
- 2024.02월 말 : 공포

| 첨부자료 (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.)

[붙임1] 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(요약본)-최종

[붙임2] 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(상세본)-최종

| Contact



유다예 관세사
T 070-4353-1588
E dyyoo@esein.co.kr



박수민 팀장
T 070-4353-5153
E smpark2@esein.co.kr